

의안번호	제 303 호
의결년월일	2001. 9. 12.
의결사항	원안가결

발의자	환경특별위원회
제출 년월일	2001. 9. 12.

환경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견

수신 의 장

제목 환경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견

지방자치법제58조, 보은군의회회의규칙제19조 및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견을 붙임과 같이 발의 합니다.

붙임 안건1부. 끝.

발 의 자 : 환경특별위원회

환경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견

의안 번호	303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1. 9. 12.

제안자 : 환경특별위원회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제58조,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
-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의회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지역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
- 환경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견을 제안

2. 주요내용 : 붙임 환경특별위원회운영계획 참조

붙임 환경특별위원회운영계획 1부.

환경특별위원회운영계획

위원장 : 이 익 규(인)

간 사 : 우 쾌 명(인)

보 은 군 의 회
환경특별위원회

환경특별위원회운영계획

I. 目 的

-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의회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
-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.

II. 運營方針

- 운영방법은 집행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현지조사활동에 중점
- 활동기간중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
- 환경오염이 심각한 시설등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의 대책 강구
- 의장은 특위활동지역을 순회하면서 특위활동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후속조치 강구

III. 細部運營計劃

- 기 간 : 2001년 9월 14일 ~ 2001년 9월 28일(15일간)
- 장 소 : 현지확인 ⇨ 환경관련 시설(각읍·면)
- 구 성 : 의장 제외 10명의원(의회사무과 직원 보조)
- 확인대상 :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무작위로 적출
 - 오염물질배출업소
 - 오수처리시설
 - 축산폐수처리시설

- 폐기물관련사업장
- 청소대행업체
- 간이급수시설
- 지방상수도
- 하수종말처리장
- 분뇨처리장
- 쓰레기매립장

○ 활동방법

- 1개조 10명의 위원으로 활동
- 제출된 자료에 의거 대상시설을 표본추출
- 현지실태 확인
- 필요시 배출시설 시료채취 분석 의뢰
- 현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
- 현지 지역주민 민원수렴 특위활동 반영
- 당일 활동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

○ 추진일정

- 특위구성및활동계획 의결 : 제111회 임시회
- 개 인 별 자 료 수 집 : 2001.9.14 - 9.20(7일간)
- 전체위원 현지확인 활동 : 2001.9.21 - 9.26(5일간)
- 특위활동결과보고서 작성 : 2001.9.27 - 9.28(2일간)
- 특위활동결과보고서 의결 : 제112회 임시회
- 결과보고서 조치요구이송 : 의결사항 통보일

IV. 行政事項

- 집행부 안내공무원 동행
 - 현지 시설 안내 및 기본자료 준비
- 특위운영에 필요한 자료 : 사전 준비
- 차량 배차 : 군청 25인승버스
- 특위활동간소복 준비